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220

제출년월일: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공원 내 신설·철거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,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함.
- 나. 「도로교통법」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개정('20.12.10.)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공원 내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, 드론장을 공원이용시설에 추가하고,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등 시설을 삭제함(안 별표 1의 제2호, 제5호 및 제6호)
- 나. 국궁장, 축구교육장, 상상마루[뚝섬 자벌레(서울생각마루) 3층]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,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함(안 별표 2의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 및 제8호).
- 다.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제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를 신설(명시)함(안 제17조 제1항 제10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「지방자치법」
 - 2)「도로교통법」
 - 3)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0. 12. 17.~'21. 1. 6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가.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
- 나.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 을 사용하는 경우
- 다.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·공사·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
- 라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 전거 또는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

별표 1의 표 제2호의 공원시설물란 가목 중 "게이트볼장"을 "게이트볼 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장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의 공원시설물란 나목 중 "전망문화콤플렉스(자벌레)"를 "뚝섬 자벌레(서울생각마루)"로 하며, 같은 표 제6호의 공원시설물란 중 "이색자전거체험장, 레일바이크, MTB코스장"을 "MTB코스장"으로, "모형항공기 이·착륙 시설"을 "드론 장"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의 표 테니스장란 아래에 국궁장란과 축구교육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1일(3시간 이내)	4,000~7,000원
국궁장	코스체험 1회	4,000~7,000원
	1개월	40,000~60,000원
축구교육장	1개월(월 4회, 주 1회 50분 기준)	60,000~80,000원

별표 2 제3호의 표 캠핑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	입장료는 징수할 수
캠핑장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	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
	캠프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정하여 징수한다.

별표 2 제5호의 표 야외무대사용란 아래에 상상마루[뚝섬 자벌레(서울생 각마루) 3층]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구분	정기 (1개월)	수시 (1일 이하)	
상상마루	자유석(1석당)	40,000~70,000원	5,000~10,000원/일	
(뚝섬 자벌레 (서울생각마루)	1인석(마루 1~5)	50,000~90,000원	5,000~15,000원/일	
3층)	모임공간 (마루6~7)	100,000~180,000원	5,000~20,000원/일	
	회의실(마루 8)	_	5,000~15,000원/1시간	

별표 2 제6호의 표 중 자전거대여소의 기준 및 이용료란 1시간 기준 및 추가요금(15분당)의 ·2인승 항목 아래에 ·기타 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중 이색자전거 체험장란 및 레일바이크란을 각각 삭제한다.

· 기타	4,000~5,000원
· 기타	1,000~1,500원

별표 2 제8호의 표 중 거북선관람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 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	제17조(금지행위) ①
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
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	10
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	10.
	리마 리스 가 중이 시
행위. <u>다만, 장애인 또는 노약자</u>	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</u>
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	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</u>
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	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
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, 공사,	
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	
하는 행위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	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	
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	
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	
<신 설>	<u>가.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</u>
	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
	<u>경우</u>
<신 설>	나.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
	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
	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
<신 설>	다.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·
	<u>공사·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</u>
	위하여 출입하는 경우
<신 설>	라.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
へに	

현 행	개 정 안
	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
	전기자전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
	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
	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
	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
	행하는 경우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)

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

구 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시 설	(생략)
2. 체육시설	가. 축구장, 배구장, 족구장, 농구장, 야구장(어린이, 성인)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우드볼장, 국궁장,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론볼링장, 파크골프장,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나. (생략)
3. 휴양시설	(생략)
4. 학습시설	(생략)
5. 시민편익시 설	가. (생략) 나. 교량전망카페, <u>전망문화콤플</u> 렉스(자벌레), 야외원형극장, 야외무대 다. (생략)

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

구 분	공원시설물	
1. 수상이용시 설	(생략)	
2. 체육시설	가 게이 게이 트볼장, 풋살 경기장, 축구교육 장, 	
3. 휴양시설	(현행과 같음)	
4. 학습시설	(현행과 같음)	
5. 시민편익시 설	가. (현행과 같음) 나, <u>뚝섬 자벌레</u> (서울생각마루), 다. (현행과 같음)	

	현 행
구 분	공원시설물
6. 유희시설	가. 어린이놀이터, 자전거공원(이 색자전거체험장, 레일바이크, MTB코스장, 익스트림장, 자전 거교육장 등), <u>모형항공기 이</u> <u>착륙 시설</u> , 레이싱경기장, 자 전거대여소 나. (생략)
7. 공원편의시 설	(생략)

구 분	공원시설물	
6. 유희시설	가 (MTB코스장,), <u>드론장</u> ,	
	나. (현행과 같음)	
7. 공원편의시 설	(현행과 같음)	
8. 조경시설	(현행과 같음)	
9. 그 밖의 시설	· (현행과 같음)	

정

안

개

[별표 2]

설

8. 조경시설

9. 그 밖의 시설 (생략)

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(생략)

- 1. (생 략)
- 2. 체육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
축구 장	(생략)	
아란아라장	(생략)	
성인야구장	(생략)	
배 구 장		
족 구 장	(생략)	
농구 장		
테니스장	(생략)	
	<신 설>	
	<신 설>	

[별표 2]

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체육시설

구 분	기 준 및	이 용 료
축 구 장	(현행고) 같음)
아란아큐장	(현행고	구 같음)
성인야구장	(현행고	가 같음)
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	(현행과 같음)	
테니스장	(현행과 같음)	
<u>국궁장</u>	1일(3시간 이내) 코스체험 1회 1개월	4,000~7,000원 4,000~7,000원 40,000~60,000 원
<u>축구</u>	1개월(월 4회, 주	60,000~80,000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배드민턴장	(생략)
이혼 안라인 롤러스케 이트장	(생략)
비고:(생략)

개

구 분	기 준 및	이 용 료	
교육장	1회 50분 기준)		<u>원</u>
배드민턴장	바드민턴장 (현행과 같음)		
야혼연원			
롤러스케	(현행고	구 같음)	
이트장			
비고:(비 고 : (현행과 같음)		

정

안

3. 휴양시설

구 분	기 준 5	및 이 용 료	비고
<u>캠핑장</u>	<u>1박 기준</u> · <u>1면당</u> 단체(1면당)	13,000~19,000 원 7,200~10,000 원	단체는 30인 이상으 로 하 되, 중 학생 이하만 적용한 다.
강변 물놀이장	(생략)		
수영장	(생략)		

3. 휴양시설

구 분	기	준 및 이	용 료	비고
	<u>캠핑장</u>	<u>1면당</u> (1박 기준)	13,000~25,000 <u>원</u>	<u>입장료는</u> <u>징수할 수</u> <u>없고, 그</u>
캠핑장	글램핑장	<u>1면당</u> (1박 기준)	80,000~120,000 원	<u>밖의 시설</u> 이용료를 징수하고
70.0	캠프시설	개소당 (바비큐, 캠 프 파 이 어 등)	<u>5,000~20,000</u> <u>원</u>	자할
강변 물놀이장	(현행과 같음)			
수영장	(현행과 같음)			

4. (생략)

5. 시민편익시설

4. (현행과 같음)

5. 시민편익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비고
야외 워형극장	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 안
구 분 기준및이용료 비고 야외 이성그가 (생략)	야외무대 사 용 (현행과 같음)
원형극장 (생략) 야외무대 사 용 (생략)	구분 <u>정기</u> <u>(1일</u> <u>상</u> 상마루 <u>이하)</u>
<신 설>	[뚝섬 자발레 (서울생각 마루) 고위공간 (마루 1~5) 40,000~ 70,000원 10,000원/일 보이용간 (마루 1~5) 50,000~ 90,000원 15,000원/일 모임공간 (마루 100,000~ 3층) 5,000~ 10,000원/일 모임공간 (마루 100,000~ 180,000원 20,000원/일 회의실 (마루 8) 5,000~ 1300원/시간
6. 유희시설	6. 유희시설

	현	행	
구 분	기 준 및	이 용 료	비고
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 ·1인승 ·2인승 〈신 설〉 추가요금(15분당) ·1인승 ·2인승 〈신 설〉	2,700~3,800 원 5,400~7,600 원 〈신 설〉 500~700원 1,000~1,500 원 〈신 설〉	
<u>이색자전거</u> <u>체험장</u>	<u>1회당(20분</u> <u>기준)</u>	<u>1,000~1,500</u> <u>원</u>	6세미만 어 린이는 사용 료를 받지 아니한다.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	(생 략)	
레일바이크	_1회당(1차량)	<u>1,000~3,000</u> <u>원</u>	

개 정 안

구	분	기 준 및	이 용 료	비	고
자전거	대여소	1시간 기준 ·1인승 ·2인승 · <u>기타</u> 추가요금(15분당) ·1인승 ·2인승 · <u>기타</u>	2,700~3,800 원 5,400~7,600 원 4,000~5,000 원 1,000~1,500 원 1,000~1,500 원		
<삭 제>					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				
<u>〈삭 제〉</u>					

7. (생략)

8. 기 타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영화촬영	(생략)
녹 화	(생략)
거북선관람	어란이(6~12세) ·1회 청소년(13~18세) ·1회 성 인(19세이상) ·1회 원
잔디밭행사	(생략)

7. (현행과 같음)

8. 기 타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영화촬영	(생략)
녹 호	- (생략)
	<u><</u> 삭 제>
잔디밭행시	(생략)
도로점용	- (생략)

현 행	개 정 안
구 분 기준및이용료	구 분 기준및이용료
도로점용 행 사 (생략)	행 사 입 장 권 (Alar)
입 장 권 발매행사 (생략)	입 장 권 발매행사 서울함공원 (생략)
서울함공원 (생략)	^[24]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신설·철거된 공원이용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,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조례 별표2에 명시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 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

4. 작성자

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심정은 ☎ 02-3780-0752